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건강증진과-1715 |
| 결재일자 | 2013.1.23. |
| 공개여부 | 대시민공개      |
| 방침번호 |            |

시 민

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어르신건강증진팀장 | 건강증진과장       |
| 김윤경 | 조미자       | 01/23<br>최종춘 |



2013년 65세이상 노인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계획

2013. 1.

**복 지 건 강 실**  
**(건강증진과)**

# 65세이상 노인 원외약국 약제비지원 계획

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1,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보건의로 접근도를 향상시키고,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

I

## 사업 개요

### 지원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
- 노인복지법제26조(경로우대, 이용요금 할인), 자치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, 시장방침 제637호('00.6.19)

### 시행시기 : 2000.07.01부터 실시

### 지원요건 :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[별표 4]

| 요양급여비용총액에 관한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상자 연령 | 본인 부담액 |
|---|--------|--------|
| ◦ 처방전에 의거 의약품 조제<br>- 조제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| 65세 이상 | 1,200원 |

### 지원기준 : 조제 1건당 1,200원

### 지원대상 : 65세 이상 서울시민

### 지원목표 : 250,000건

II

## 보조금 교부계획

- 교부시기** : 월별 교부 원칙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- 교부대상** : 25개 자치구 보건소
- 교부기준** : '13년 확정내시
  - 상반기에는 기통보된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하되, 하반기에는 실집행액 기준으로 자치구간 교부금 재조정을 통한 집행잔액의 최소화 도모
- 교부방법** : 자치구 세입공금계좌에 입금
- 예산과목** : 시민건강수준 향상, 공공보건기능강화로 취약계층 건강증진,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,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, 자치단체경상보조(308-01)
- 소요예산** : 260,000천원(시비 60%, 구비40%)
- 행정사항**
  - 실적보고 : 상·하반기보고